

장례비용보험 VS 상조서비스

1. 기존 상조업체의 문제점

- ✓ 업체의 난립 및 개인기업으로서 회계가 불투명하고 운영이 투명하지 않아 중간 폐업이 잇달아 가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
- ✓ 업체의 폐업 시 최대 구제받더라도 이미 납입한 금액의 50% 이상을 받을 수 없음
- ✓ 회계 및 운영이 금융감독원에 의해 철저히 규제 받는 보험사와 협의한 상품을 개발 제공하여 불안 요소 제거 필요

2. 보험과 상조 서비스 비교

| 구분 | 기업비용보상보험 장례비용보장 특약 | 상조서비스 |
|------------|---|---|
| 사업주체 | 보험회사 | 상조회사 |
| 법적 근거 | 상법 (보험편) | 근거 없음 |
| 사업자규제 | 보험업법 | 할부거래법 |
| 감독기관 | 금융위원회 / 금융감독원 | 공정거래위원회 |
| 서비스 제공방식 | 약정된 보험금 지급 | 장례물품 및 서비스를 현물로 지급 |
| 서비스 특징 | 보험 사고가 있으면 보상, 없으면 보상하지 않음 | 저축 사고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1회는 이용할 수 있으나, 현물로만 가능 |
| 서비스기간 | 1년 단위로 연장 또는 중단 선택 가능 | 통상 10년 가입 (중도해지시 납부 금액에 비해 해약환급금 소액) |
| 서비스 기간의 기준 | 법인 기준 * 1년 내 입퇴사 직원들의 수에 따라 보험료만 정산 (직원은 자동 담보) | 개인(직원) 기준 * 퇴사한 직원은 퇴사 이후 납부여부 체크 필요 * 신규 입사한 직원은 다시 10년 계약 가입 필요 |
| 담보 횟수 | 연간 1회 | 가입기간 중 1회 (통상 10년 중 1회) |
| 월납입금 | 인당 10,000 원 | 인당 30,000 ~ 50,000 원 |
| 보상금액 | 인당 4 백만원 | 약 300 만원 수준의 물품 또는 서비스 |
| 자금운영 | 금융감독원 법규에 따라 엄정 운영 | 월납입금의 50% 공제 예치 후 차액은 상조회사에서 임의 운영 |
| 손비처리 | 기업성 일반보험으로 전액 손비처리 | 복리후생비 손비 인정 |